

예산총칙

2011년도 간주예산 2 차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9,792,456	6,893,774
일반회계		220,411,761	6,612,353
특별회계		9,380,695	281,421
기타특별회계		9,380,695	281,42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0,735	14,422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15,732	12,472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688,000	50,64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05,276	9,158
	주차장 특별회계	6,459,546	193,786
	기반시설 특별회계	31,406	94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90,40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제3회 추경 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변경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구비부담분 포함),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의결(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